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연구진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나(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 요약

- 국가균형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약 네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음
 - 첫째,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그 사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나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포괄보조사업의 대상사업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데,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각 부처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어 총괄적인 현황파악이 어렵고, 각 부서에서도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셋째, 배분기준 및 지역별 배분규모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점임
 - 넷째, 다중 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인데 관련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차등지원평가를 받고, 시도는 자체평가를, 시군구는 시도평가까지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특회계관련 자료 및 데이터, 일본사례 등을 통해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을 실시하였고¹⁾,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운영단계별 현안이 도출되었음

1)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과정에서 균특회계관련 데이터나 선행연구 등이 많지 않았고, 특히 재정적인 접근 외에 사업부서 차원에서 운영측면의 내용을 다룬 논문이나 보고서는 균형위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보고서 1건 외에는 전무함에 따라 본 연구가 심도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계획단계의 현안
 - 신규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모호(부처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상이)
 - 자율편성 한도액 배분기준 및 산정방식 불명확
 - 균특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율성 결여
 - 국비 지원비율의 미준수
 - 집행단계의 현안
 - 포괄보조금제도 본연의 자율성 결여
 - 두 해 연속 예산 이월시 사업비가 소멸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
 - 평가단계의 현안
 - 운영성과평가 지표인 실적행률과 사전이행절차의 현실적 한계 존재
 - 경쟁력 향상사업 지원평가 기준인 복합시설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 평가항목의 객관성이나 계량화가 낮음
 -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규모 미흡
 - 균형발전 전담인력관련 현안
 - 균특회계 시행 첫 해 전담팀 설치의 목적인 지자체별 일관된 균형발전계획 운영 및 사업추진 동력 약화
 - 전담팀 운영비는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중앙단위에서의 관리 부족
 - 국고지원 사업이나 지자체별로 전담팀 운영방식 상이
- 이상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균특회계의 운영 단계별 개선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 계획단계의 개선방안
-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통일: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전 이행절차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했으나, 공모에서는 탈락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음에 따라 균특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 지자체에서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예측 가능한 사전 평가기준을 제시: 일본의 경우 일괄교부금 지원시 사용될 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제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사전 자체 검토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균특위 차원에서 일관된 지원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의 준비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집행단계의 개선방안

-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사후 자체평가나 균특위 평가시 포괄보조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에 지출된 경우,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지자체 균특사업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내역사업의 소관부처별 구분을 없애고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예산 이월 원인 차별화: 지자체에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는 국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도 있지만,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에 따라 이월 원인을 차별화하여 사업추진 여건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이월은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평가단계의 개선방안

- 평가의 일원화 필요: 첫 번째는 사업의 소관부처에 균특위의 평가기준을 받아서 그 결과를 균특위에 송부하여 균특위의 평가를 대체하는 방안, 두 번째는 균특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균특위에서 소관부처별 평가기준들을 취합하여, 소관분야별로 차별성 있게 평가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소관부처의 평가는 생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일원화하든지 후술할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 평가지표의 구체화, 계량화: 성과평가지 조기집행률과 같이 사업비 집행률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을 검토 및 취합하여 좀 더 구체화 되고 적실성 있는 지표가 발전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평가지표가 계량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일본의 오키나와현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균평위를 중심으로 계량지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의 중기 예산수요 등에 기반하여 지역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성과가 우수한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포괄보조사업의 통합·단순화가 필요한데 부처별 1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내역사업을 보다 창의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균특회계 전담조직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개발사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 전문기를 채용,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균특사업을 유치한 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또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균형발전팀 운영비인 인건비 지급은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균특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이러한 인력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계획계약제도와의 관계 사전 검토방안

- 계획계약은 프랑스에서 레지옹(지자체)과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를 분담할 것을 국가와 레지옹의 대표가 공식계약을 통해 약속하는 것임
- 균특회계는 지자체 자체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의 예산을 패키지방식으로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협약제도의 의의와 상대적으로 부합함에 따라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단위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식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제2장 포괄보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7
제1절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요	9
1.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9
2.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방식	11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13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	13
2. 균특회계의 구조	15
3.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절차	17
4. 균특회계의 2019년 주요 변화내용	22
제3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현안	25
제1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27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별 운영현황	38
1. 균특회계의 포괄보조 현황	38



2. 시·도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 현황	40
3. 시·군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 현황	41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의 현안	44
1. 계획단계의 현안	44
2. 집행단계의 현안	45
3. 평가단계의 현안	46
4. 균형발전 전담인력관련 현안	48
제4장 일본 포괄보조금(일괄교부금)의 분석	57
제1절 일본 일괄교부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59
1. 일괄교부금 제도의 설립 배경	59
2.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개요	60
3.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의 개요	63
제2절 일본 일괄교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64
1. 일괄교부금 제도의 개요 및 현황	64
2.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의 운영현황	64
제3절 사업의 운영사례	70
1. 도시재생추진사업비 보조(국토교통성)	70
2. 오키나와의 일괄교부금 사례	744
제4절 시사점	79
제5장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81
제1절 균특회계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83
1. 계획단계의 개선방안	83





2. 집행단계의 개선방안	85
3. 평가단계의 개선방안	86
제2절 균특회계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88
1.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88
2. 균특회계 전담조직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88
3. 계획계약제도와와의 관계 사전 검토방안 ...	89
별첨	91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 국가보조금제도의 분류와 특성	10
<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12
<표 3>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이명박 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2010년 기준)	14
<표 4> 이명박 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2014년 기준) ..	15
<표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018년도 기준)	16
<표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 내용 종합	22
<표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추이	27
<표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28
<표 9>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 규모	30
<표 10>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 규모(비중)	32
<표 11>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과 보조율	33
<표 12>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과 보조율	35
<표 13>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내역	37
<표 14>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39
<표 15> 시군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41
<표 16> 시·도별 균형발전팀 업무분장	50
<표 17> 국고보조금 9종류	61
<표 18> 지역자주전략교부금제도 실시에서 폐지· 이행까지의 경위	61



<표 19> 오키나와 일괄교부금 제도 설립의 역사적 배경	63
<표 20> 2017년도 기본틀 배분표	65
<표 21>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 교부대상사업 ..	67
<표 22>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의 비목·용도 점검평가항목 일람	68
<표 23> 계획평가의 타당성검증 지표	71
<표 24> 사후평가지표 예	72
<표 25> (일부발체) 2018년도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 교부금 활용사업	74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19
<그림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21
<그림 3> 일본 포괄적 일괄교부금 개요도 (제도설립 : 2011~2013년)	60
<그림 4> 도시재생정비계획 작성프로세스	70
<그림 5> 보통교부세액 산정방법	109
<그림 6> 지방교부세와 임시재정대책채의 흐름	11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포괄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지속
 - 용도제약이 없는 일반보조금과 특정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는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나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즉, 사업선택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 부족, 자원배분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미흡, 지방비 부담 가중, 이중 평가 등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제도개편 과정에의 반영은 미흡하였음
- 포괄보조사업 대상사업 파악의 한계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하고,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별첨1)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토록 하고 있고,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그러나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이 각 부처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어 총괄적인 현황파악이 어렵고, 각 부서에서도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배분기준 및 지역별 배분규모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과 객관성 미흡
 - 포괄보조금은 무엇보다 공식주의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예산편중과 이

에 따른 지역갈등을 이유로 산정기준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7)

-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지출한도 배분 모형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여전히 실제 계산방식과 배분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포괄보조금제도의 원칙에서도 벗어나지만 산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됨

○ 다중 평가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 균특회계 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차등지원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자체평가와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즉, 2019년도 지침에 의하면 균형위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성과와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 예산운용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평가를 실시하는데, 더불어서 중앙관련 부처 평가와 자체평가를 고려하면 지자체의 업무부담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상의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음

2. 연구목적

○ 국가균형발전회계 관리 및 운영측면에서의 최근 현황분석과 쟁점 도출

- 재정적 측면에서의 균특회계 운영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안 제시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실제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심도 있는 현황파악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즉,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지방재정측면에서의 접근 외에 실제 사업부서에서 균특사업을 운영 및 관리, 평가를 받거나 평가함에 있어서의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일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재정적 부분 외에 운영 및 평가측면에서도 이전에 포괄보조금제도를 운영한 바 있는(오키나와현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정권마다 회계명칭이 바뀌고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범위가 조정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등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후평가 또한 이중 삼중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업무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체계 전반 및 평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균특회계를 바탕으로 한 포괄보조금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음에 따라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의뢰 과제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충남을 사례로 분석할 것임
- 시간적 범위
 - 균특회계 운영체계 전반을 분석할 계획이므로 2005년 당시의 균형발전특별회계부터 지침을 바탕으로 한 2019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함
- 내용적 범위
 - 참여정부 ~ 문재인 정부 균특회계사업 전반을 분석함
 - 특히 재정적 접근보다는 전체 제도 운영체계나 평가 주체 등을 바탕으로 한 평가체계 등에 대해 분석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포괄보조금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제도 변화, 운영 전반 등에 대해 분석함
- 기초통계분석
 - 균특회계 사업 규모변화 및 쟁점 도출을 위해 기초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관계공무원 면담 및 FGI 분석
 - 균특회계의 실질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예산부서 외에 사업부서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 균형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 분석 진행

제 2 장

포괄보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제1절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요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KRILA

제 2 장

포괄보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제1절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요

1.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자원 이전과 정책집행의 포괄성 및 자원배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고 있음
 - “포괄보조는 보조금을 받는 정부의 재량권 하에 있는 광범위한 기능적 영역에서 성문법적 공식에 따라 주로 일반정부 단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기금”임(Waller, 2005; 이정희·박경돈, 2010.에서 재인용)
 - 지출용도에 특별한 제한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일반 재원으로 이용되는 일반 포괄보조금과 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구분됨
 - 조건부 포괄보조금은 다시 그 자원활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수준에 따라 완전 조건부, 제한적 조건부, 일반조건부 등으로 분류 가능함(정은희 외, 2014)
 - 자원배분 방식을 적용한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과거의 지출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현재의 재정수요 기준을 적용한 포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윤영진·이재원, 2006)
 - 과거지출 정보를 적용하는 경우, 과거지출 평균을 반영하거나 과거 지출 증감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때 물가상승분의 반영여부가 쟁점이 됨(정은희 외, 2014)
 - 재정수요 기준에 따라서 미래 기준의 잠재재정 수요를 산정할 수도 있음
- 국가보조금은 용도지정과 지방정부의 부담금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표 1> 국가보조금제도의 분류와 특성

구분	일반보조금	특별보조금	포괄보조금
용도지정	×	○	○ 또는 ×
지방비부담	×	○	○ 또는 ×
용도 자율성	제한 없음	제한적임	블록 내에서만 자율적

자료: Fisher 1996; 조재환·이한성, 2013 재인용: 146.²⁾

- 포괄보조금방식은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을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을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임
 - 개별사업을 선정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존의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사업심의 및 운영과정의 핵심적인 결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복지 분야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논의됨
- 포괄보조금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조기현, 2012; GAO, 1995)³⁾
 - 기존의 특별보조금방식에 비해 예산편성의 자율성, 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음
 -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음(정은희 외, 2014)
 - 지역에 적합한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조재환, 이한성(2013), 지방농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농림수산 포괄보조금제 운용 방안, 농촌계획 19(3); 145-155.

3) 조기현(2012).

- 사업조정 및 기획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 예방 및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조정과정을 통해 부처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함(정은희 외, 2014)
- 개별보조금 방식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유인이 적어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정은희 외, 2014)

2.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방식⁴⁾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현황을 살피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이루어짐
 -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됨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지역자율계정은 다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됨
 -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별도 운영
- 지역자율계정은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2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정비하여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균특회계의 예산규모는 2018년 9조 8,899억 원임
 - 이 중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은 5조 2,6410억 원으로 53.23%를 차지하고 있음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포괄보조금방식 복지분야 적용 방안. p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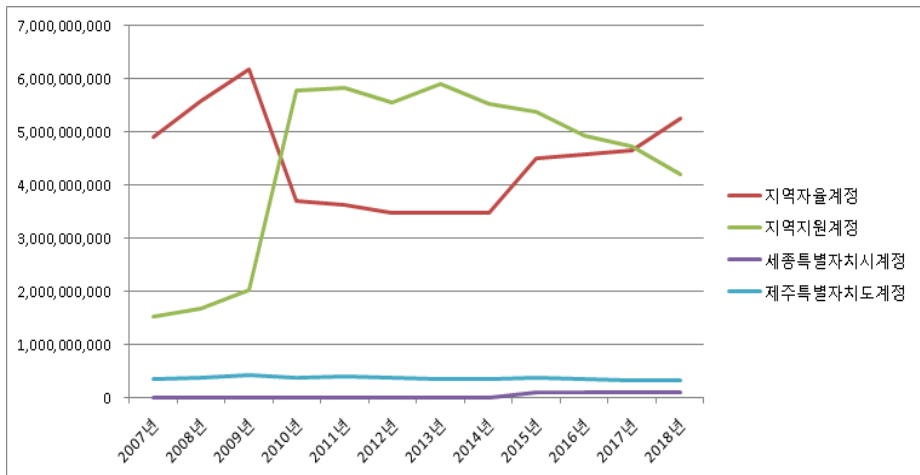
<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단위: 백만 원)

구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2018년	9,889,905	5,264,103	(53.23%)
2017년	9,821,917	4,664,519	(47.49%)
2016년	9,973,926	4,590,081	(46.02%)
2015년	10,338,940	4,498,064	(43.51%)
2014년	9,361,289	3,477,272	(37.15%)
2013년	9,731,410	3,473,746	(35.70%)
2012년	9,408,497	3,470,655	(36.89%)
2011년	9,852,576	3,633,210	(36.88%)
2010년	9,861,548	3,692,433	(37.44%)
2009년	8,655,630	6,190,303	(71.52%)
2008년	7,638,226	5,576,448	(73.01%)
2007년	6,792,864	4,911,448	(72.30%)

주: 지역자율계정은 (05)지역개발사업계정→(10)지역개발계정→(14)생활개발계정→(18)지역자율계정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음
-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균특회계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정부 예산부터 균특회계를 운영함(강현수, 2018)
- 균특회계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중앙 정부의 이전 재원이지만,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획 집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재원으로 설계됨(강현수, 2018)
 -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진 균특회계는 낙후지역 개발, 지역 SOC, 농어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산업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성되었음
 -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신설됨
- 이명박 정부는 핵심 지역발전 정책으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0년 예산부터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 개편함
 -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이 ‘광역발전계정’으로 명칭 변경됨

<표 3>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이명박 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2010년 기준)

구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국가균형발전 지원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회계구조	① 지역개발사업계정 ② 지역혁신사업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① 지역개발계정 ② 광역발전계정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역계정	20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광역계정	시·도 단위 사업에 주로 지원	시·도간 연계 사업 중점 지원

주: 강현수(2018).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 에서 재인용
자료: 기획재정부(201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0.

- 박근혜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2015년 예산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다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 개편함
 - 지역개발계정이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이 ‘경제발전계정’으로 명칭 변경됨
 - ‘세종특별자치도계정’이 신설됨

<표 4> 이명박 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2014년 기준)

구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계구조	① 지역개발계정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① 생활기반계정 37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경제발전계정 5+2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

주: 강현수(2018).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방안 에서 재인용
 자료: 기획재정부(201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4.5.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명칭인 균특회계로 복원됨(강현수, 2018)
- 생활기반계정은 ‘지역자율계정’으로, 경제발전계정은 ‘지역지원계정’으로 명칭이 다시 변경됨

2. 균특회계의 구조⁵⁾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크게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지역자율계정과 부처 직접편성 사업인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⁶⁾

5) 기획재정부(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6) 2018년 2월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생활기반계정은 지역자율계정으로, 경제발전계정은 지역지원계정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서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됨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지역자율계정은 다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됨
-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별도 운영

<표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2018년도 기준)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편성방식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한 각 사업과 계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 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세종·제주계정]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 직접 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3.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절차

가. 시·도 자율편성사업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7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예산 신청하며 별도 지출한도는 해당 세부사업에만 배분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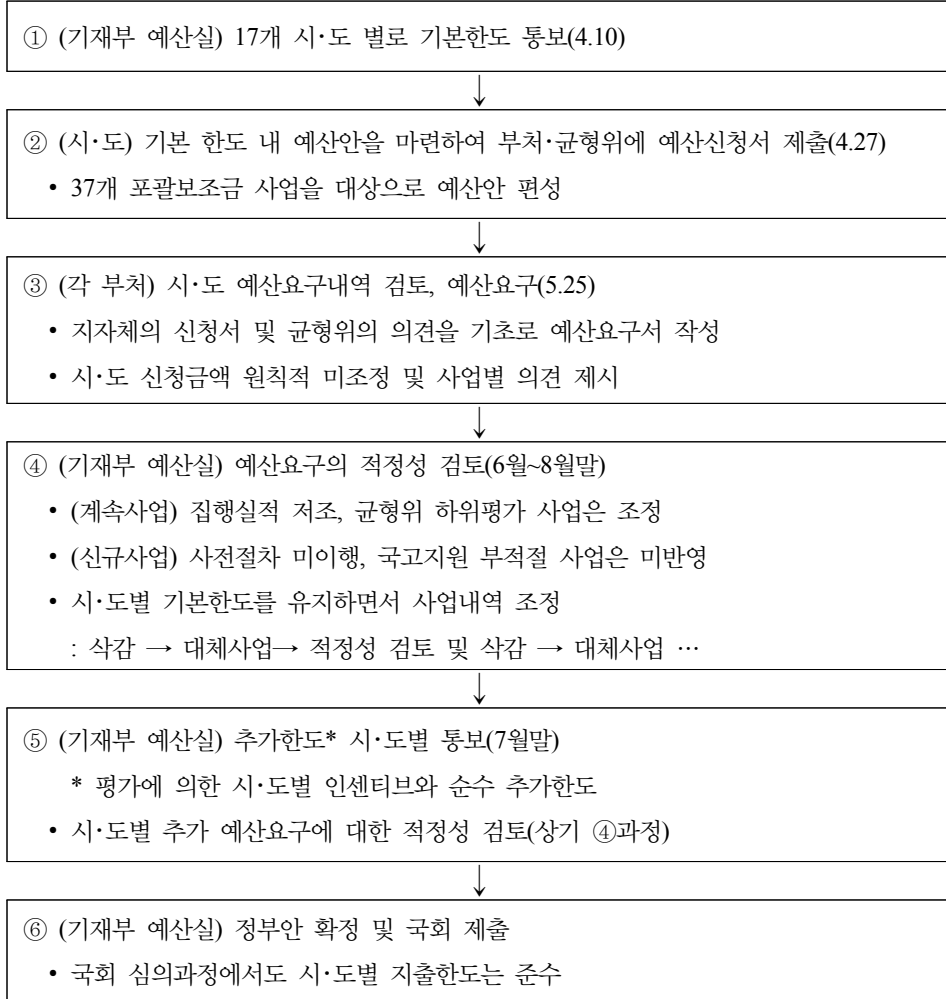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단계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27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함
 -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 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함
-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함
 -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7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함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함

2)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를 구분하여 예산을 요구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로 요구함
 - * 예) 국토교통부 :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전 부처 :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집행 반환 국고보조금) 등

<그림 1>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자료: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

(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 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택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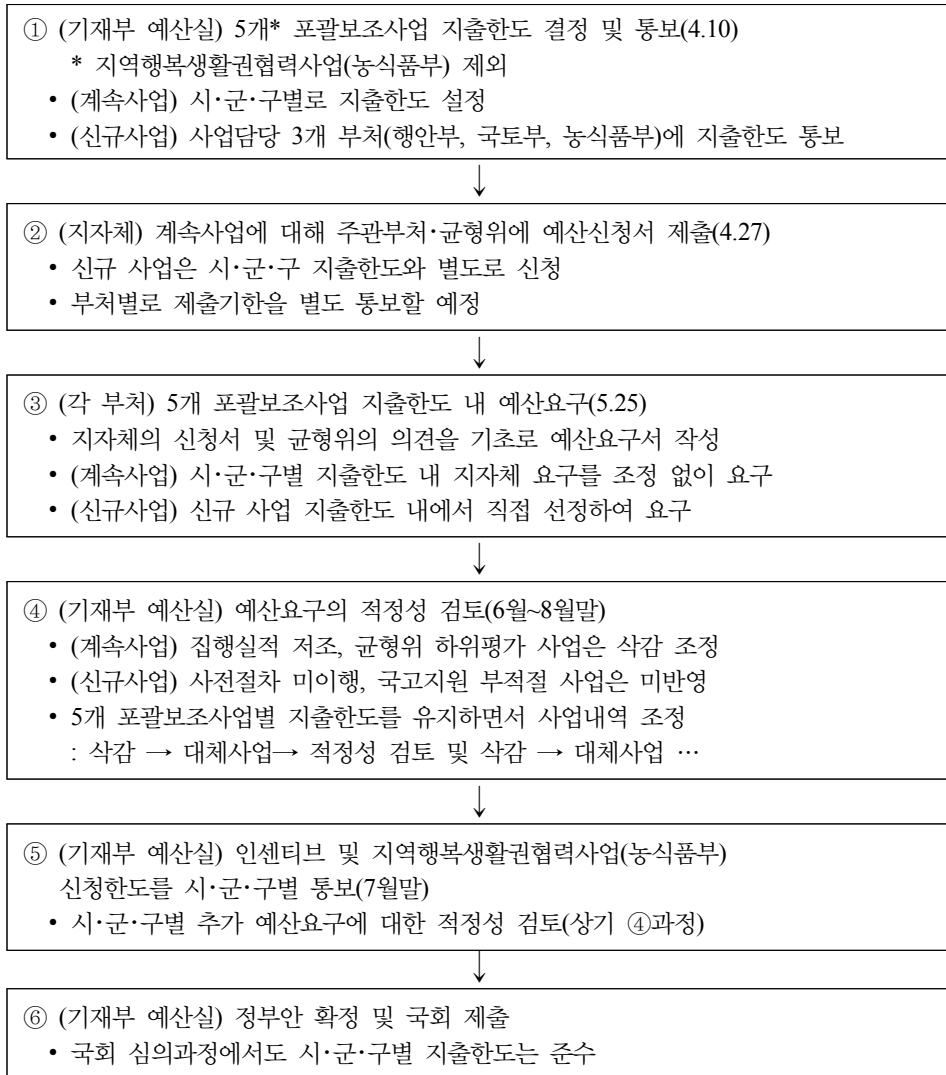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27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별로 재정당국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역 이외의 신규 내역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함
 -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시·군·구는 신규소요에 대해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함(신청한도 내 신규소요에 대한 예산신청은 불가)
-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함

2)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함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지원 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소요를 요구함(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함

<그림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료: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4. 균특회계의 2019년 주요 변화내용⁷⁾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 사항 반영

○ 회계, 계정, 위원회 등 명칭 변경

-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 지역자율계정, 경제발전계정 → 지역지원계정
-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 균특회계 예산 편성 과정 상 균형위 의견제시 역할 강화

- ① 지자체는 4.30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균형위에 제출
- ②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균형위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 ③ 균형위는 균특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5.31일까지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에 통보
- ④ 기재부는 지역위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는 균형위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함

<표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8.2) 내용 종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회계명칭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목적	•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효율적 추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정구분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19. 4)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용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위원회·기획단 지역생활권 / 경제협력권 지역발전계획·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 기초생활권 / 광역협력권 국가균형발전계획·시책
예산 편성 절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8.

나. 포괄보조 세부사업 추가

- ('18지침) 37개(시·도 31, 시·군·구 6) → ('19지침) 43개(시·도 37, 시·군·구 6)
- '18예산 편성시 타 회계로부터 이관된 사업 추가

-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공공형택시지원, (농식품부) 농촌형교통모델, (문체부) 지역문화행사지원, (해수부)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등 5개 세부 사업

○ 사회적 가치 관련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신설

다. 지자체의 사업선택 자율성 보장

- 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사업을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
 - (변경 전)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
 - (변경 후)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라. 균형위 평가 하위(미흡) 사업 구조조정 방식 개선

- (변경 전) 하위 세부사업별 금액을 '18년 대비 10% 감액
 - ⇒ (변경 후) 하위 사업들의 총액을 '18년 대비 10% 감액*
 - * 하위 세부사업별 삭감률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변경 전) 하위사업 예산은 '18년 대비 10% 감액
 - ⇒ (변경 후) 원칙적으로 '18년 대비 10% 감액하되, 하위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18년에 감소된 경우, '17년 대비 10% 감액*
 - * '17년 대비 '18년 예산이 감소한 경우 既 구조조정된 것으로 간주

마. 포괄보조사업 전용 제도 개선

- 균특회계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상호 동의한 경우
 - 지자체 간 지원금액을 상호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허용
 - * (예시) 포괄보조 A사업 : B광역시 △10억원 ⇔ C광역시 +10억원

제 3 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현안

제1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별
운영현황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의 현안

KRILIA

제 3 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및 현안

제1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현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약 연 10조 원으로 2005년 균특회계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약 5조 원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2009년 SOC 사업이 대규모로 편입되면서 지역지원계정 예산규모가 급증한 이후 지금까지 10조원 규모로 유지됨
- 전체 세출예산 대비 균특회계의 비중을 살펴보면 10년 전인 2007년에 1.38%이었으나 2011년도와 2012년에 각각 1.56%와 1.42%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급감, 2018년도 현재 1.03%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표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세출예산 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8년	963,517,009	9,889,905	1.03
2017년	954,925,189	9,821,917	1.03
2016년	950,682,584	9,973,926	1.05
2015년	827,499,915	10,338,940	1.25
2014년	825,102,742	9,361,289	1.13
2013년	795,920,921	9,731,410	1.22
2012년	662,145,115	9,408,497	1.42
2011년	633,408,999	9,852,576	1.56
2010년	732,207,408	9,861,548	1.35
2009년	669,783,142	8,655,630	1.29
2008년	589,508,428	7,638,226	1.30
2007년	492,991,473	6,792,864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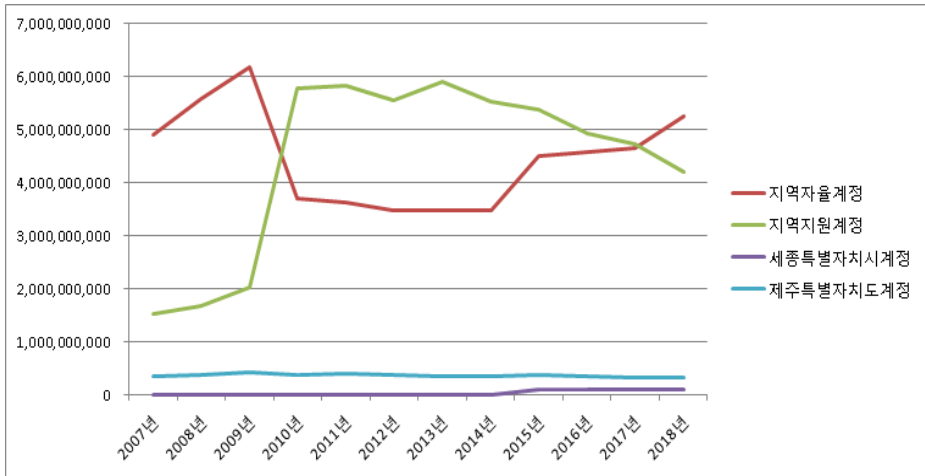
- 2018년도 예산은 지역자율계정 5.2조, 지역지원계정 4.2조원으로 구성됨
 -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큰 변동이 없으나, 지역지원계정 규모는 크게 증가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인 지역자율계정은 37개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의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별로 정부의 보조율은 조금씩 다름

<표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단위: 백만 원)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2018년	9,889,905	5,264,103	(53.23%)	4,203,522	(42.50%)	100,428	(1.02%)	321,852	(3.25%)
2017년	9,821,917	4,664,519	(47.49%)	4,728,768	(48.15%)	102,649	(1.05%)	325,981	(3.32%)
2016년	9,973,926	4,590,081	(46.02%)	4,918,356	(49.31%)	103,694	(1.04%)	361,795	(3.63%)
2015년	10,338,940	4,498,064	(43.51%)	5,368,589	(51.93%)	102,218	(0.99%)	370,069	(3.58%)
2014년	9,361,289	3,477,272	(37.15%)	5,539,752	(59.18%)	0	(0.00%)	344,265	(3.68%)
2013년	9,731,410	3,473,746	(35.70%)	5,904,594	(60.68%)	0	(0.00%)	353,070	(3.63%)
2012년	9,408,497	3,470,655	(36.89%)	5,553,836	(59.03%)	0	(0.00%)	384,006	(4.08%)
2011년	9,852,576	3,633,210	(36.88%)	5,825,158	(59.12%)	0	(0.00%)	394,208	(4.00%)
2010년	9,861,548	3,692,433	(37.44%)	5,790,731	(58.72%)	0	(0.00%)	378,383	(3.84%)
2009년	8,655,630	6,190,303	(71.52%)	2,030,889	(23.46%)	0	(0.00%)	434,438	(5.02%)
2008년	7,638,226	5,576,448	(73.01%)	1,676,993	(21.96%)	0	(0.00%)	384,785	(5.04%)
2007년	6,792,864	4,911,448	(72.30%)	1,533,800	(22.58%)	0	(0.00%)	347,616	(5.12%)

주 1. 지역자율계정은 (05)지역개발사업계정→(10)지역개발계정→(14)생활계발계정→(18)지역자율계정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지역지원계정은 (05)지역혁신사업계정→(10)광역발전계정→(14)경제발전계정→(18)지역지원계정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3.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2015년 도입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부처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879,302백만 원으로, 지역자율계정이 1,151,445백만 원, 균형발전계정이 1,652,097백만 원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344,445백만 원으로, 지역자율계정이 1,287,368백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42,107백만 원임
 - 그 외에 교육부가 78,3562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776,980백만 원, 환경부가 770,186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계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총 5,264,103백만 원 중 국토교통부(1,151,445백만 원)와 농림축산식품부(1,287,368백만 원)가 46.3%를 차지하고 있음
- 균형발전계정의 경우 총 4,203,522백만 원 중 국토교통부가 1,652,097백만 원(39.3%), 교육부가 783,562백만 원(18.6%)을 차지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경우 100,428백만 원 중 환경부가 31,645백만 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8,200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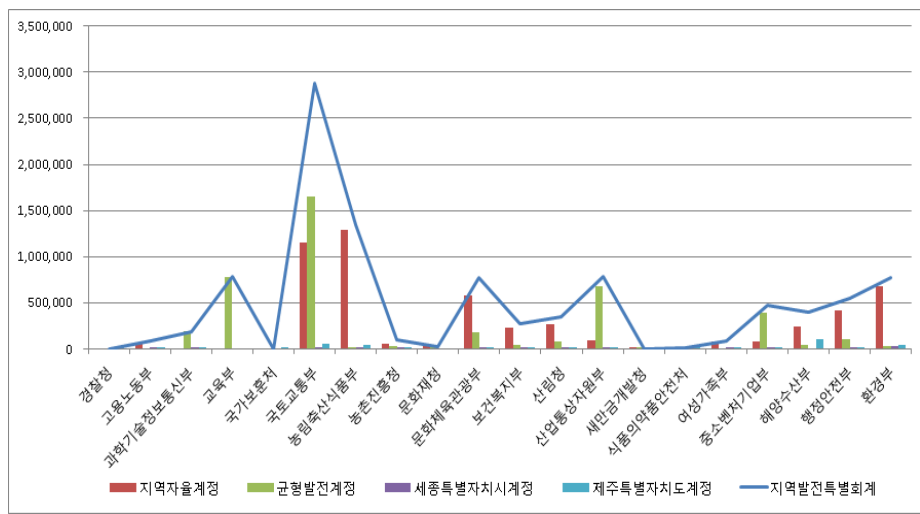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경우 321,852백만 원 중 해양수산부가 109,166백만 원, 국토교통부가 60,431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9>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	지역지원 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경찰청	4,027	0	0	0	4,027
고용노동부	82,522	72,608	0	809	9,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286	0	189,439	963	884
교육부	783,562	0	783,562	0	0
국가보훈처	1,904	0	0	0	1,904
국토교통부	2,879,302	1,151,445	1,652,097	15,329	60,431
농림축산식품부	1,344,445	1,287,368	6,277	8,693	42,107
농촌진흥청	99,465	57,620	35,238	450	6,157
문화재청	27,697	27,197	500	0	0
문화체육관광부	776,980	578,599	173,113	7,374	17,894
보건복지부	278,742	226,999	42,634	1,579	7,530
산림청	349,211	267,579	75,998	751	4,883
산업통상자원부	785,284	90,653	676,094	18,200	337
새만금개발청	3,206	2,507	699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716	0	4,580	0	136
여성가족부	87,931	80,117	0	5,682	2,132
중소벤처기업부	470,886	79,877	385,486	120	5,403
해양수산부	402,519	245,889	47,464	0	109,166
행정안전부	546,034	421,094	106,584	8,833	9,523
환경부	770,186	674,551	23,757	31,645	40,233
합계	9,889,905	5,264,103	4,203,522	100,428	321,852

주 1. 2018년 국회확정안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부처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29.11%, 농림부가 13.59%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산통부 7.94%, 교육부 7.92%, 문체부 7.86%, 환경부 7.79%로써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계정별로는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농림부(24.26%)의 비율이 가장 높고 국토부(21.87%), 환경부(12.81%), 문체부(10.99%)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교육부는 균특회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에 비해서 지역자율계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지원계정은 국토부의 사업이 매우 많고(39.30%), 다음이 교육부(18.64%), 산통부(16.08%)의 순서임

<표 10>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 규모(비중)

(단위: 백만 원)

구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경찰청	0.04%	0.00%	0.00%	0.00%	1.25%
고용노동부	0.83%	1.38%	0.00%	0.81%	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3%	0.00%	4.51%	0.96%	0.27%
교육부	7.92%	0.00%	18.64%	0.00%	0.00%
국가보훈처	0.02%	0.00%	0.00%	0.00%	0.59%
국토교통부	29.11%	21.87%	39.30%	15.26%	18.78%
농림축산식품부	13.59%	24.46%	0.15%	8.66%	13.08%
농촌진흥청	1.01%	1.09%	0.84%	0.45%	1.91%
문화재청	0.28%	0.52%	0.01%	0.00%	0.00%
문화체육관광부	7.86%	10.99%	4.12%	7.34%	5.56%
보건복지부	2.82%	4.31%	1.01%	1.57%	2.34%
산림청	3.53%	5.08%	1.81%	0.75%	1.52%
산업통상자원부	7.94%	1.72%	16.08%	18.12%	0.10%
새만금개발청	0.03%	0.05%	0.02%	0.00%	0.00%
식품의약품안전처	0.05%	0.00%	0.11%	0.00%	0.04%
여성가족부	0.89%	1.52%	0.00%	5.66%	0.66%
중소벤처기업부	4.76%	1.52%	9.17%	0.12%	1.68%
해양수산부	4.07%	4.67%	1.13%	0.00%	33.92%
행정안전부	5.52%	8.00%	2.54%	8.80%	2.96%
환경부	7.79%	12.81%	0.57%	31.51%	12.5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2018년 국회확정안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시도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부처별 세부사업과 보조율, 내역사업을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보조율은 대부분 50% 사업인 가운데 30%와 40% 지원사업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1>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과 보조율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고용부	① 사회적기업육성	70~75%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지원 등
	국토부	②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용차고지 건설 등
		③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④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⑤ 공공형택시지원	50%	·공공형택시지원
		⑥ 지방하천정비	50%	·지방하천정비
		농식품부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⑧ 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⑩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⑪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문체부	⑫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⑬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⑭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
		⑮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⑯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⑰ 지역문화행사지원	40~50%	·비엔날레지원 종교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재청	⑱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복지부	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림청	⑳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㉑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㉒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㉓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새만금	㉔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여가부	㉕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중기부	㉖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해수부	㉓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㉔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㉕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㉖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㉗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	·수산물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	
	행안부	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㉙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㉚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㉛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㉜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㉝ 노후상수도정비	50~70%	·노후상수관망·정수장	
	서민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㉞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㉟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노후도심 재생, 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㊱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㊲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㊳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㊴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자료: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표 12>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과 보조율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고용부	① 사회적기업육성	70~75%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지원 등
	국토부	②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③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④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⑤ 공공형택시지원	50%	·공공형택시지원
		⑥ 지방하천정비	50%	·지방하천정비
		농식품부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⑧ 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⑩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⑪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문체부	⑫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⑬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⑭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
		⑮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⑯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⑰ 지역문화행사지원	40~50%	·비엔날레지원 종교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재청	⑱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복지부	⑲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림청	⑳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㉑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㉒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㉓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새만금	㉔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여가부	㉕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중기부	㉖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해수부	㉓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0~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㉔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㉕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㉖ 수산물가공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㉗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50%	·수산물분석장비 구축 및 운영
	행안부	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㉙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㉚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㉛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㉜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㉝ 노후상수도정비	50~70%	·노후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국토부	㉞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㉟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노후도심 재생, 주거환경 개선
농식품부		㊱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㊲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개선 등
		㊳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행안부	㊴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자료: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균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각 광역지자체별 전체 금액의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음⁸⁾

8) 충남연구원(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표 13> 2008~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지자체별 분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39,491	54,383	149,384	82,877	78,351	79,611	79,306	79,928	91,552
부산	239,957	245,519	254,591	198,366	213,902	213,042	202,494	250,674	305,359
대구	167,706	179,162	152,581	137,387	166,797	171,600	149,622	167,601	218,509
인천	142,400	177,552	233,232	258,052	230,040	245,548	180,110	197,332	221,047
광주	163,934	151,157	145,609	140,702	133,721	137,623	145,004	142,498	142,299
대전	90,868	106,267	98,836	107,711	101,163	113,435	103,682	107,058	109,559
울산	111,196	122,301	159,666	106,316	149,899	157,087	150,123	123,895	121,947
세종	-	-	-	-	-	27,384	29,142	68,786	82,972
경기	637,827	709,174	758,623	732,702	690,452	649,824	758,785	1,020,512	1,082,071
강원	740,242	862,127	801,507	828,757	827,335	788,162	790,254	819,267	879,224
충북	542,081	621,174	600,194	635,132	615,650	586,116	558,351	610,620	652,739
충남	863,298	1,025,347	976,807	937,514	947,942	940,122	812,441	883,558	881,296
전북	886,706	1,036,572	899,635	937,570	912,119	974,302	889,864	945,281	931,820
전남	1,616,526	1,870,460	1,590,995	1,597,283	1,537,007	1,514,808	1,533,392	1,544,332	1,609,363
경북	1,129,150	1,254,157	1,217,931	1,233,217	1,329,497	1,429,457	1,377,728	1,592,484	1,768,883
경남	1,017,650	1,128,860	1,214,420	1,185,702	1,056,508	1,122,858	1,078,100	1,154,359	1,169,207
제주	404,951	451,373	386,346	399,393	400,445	364,717	348,944	370,005	370,875
소계	8,793,982	9,995,584	9,640,357	9,518,679	9,390,828	9,515,695	9,187,342	10,078,191	10,638,720

주: 해당값은 추계예산으로 정확한 값은 아님

자료: 충남연구원(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p.25.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별 운영현황

1. 균특회계의 포괄보조 현황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신청이 불가함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 '18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을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협의·조정
- 보조금사업의 집행 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
 - 각 지자체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
 - '18년 이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은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

<표 14>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②③ 생태하천 복원	50~70%
② 관광자원 개발	50%	④ 노후상수도 정비	50~70%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⑤ 대중교통 지원	70~90%
④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⑥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⑦ 주차환경개선지원	50%
⑥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⑧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⑨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⑧ 농업기반정비	80%	⑩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⑪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⑩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⑫ 지역문화행사 지원	40~50%
⑪ 어업기반정비	80%	⑬ 농촌형 교통모델	50%
⑫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⑭ 공공형택시지원	50%
⑬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⑮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50%
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⑯ 지방하천 정비	50%
⑮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⑰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⑯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⑱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⑰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⑲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⑱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⑳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⑲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㉑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⑳ 청소년시설 확충	30~88%	㉒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㉑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㉓ 소하천정비	50%
㉒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0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
 - 투자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재원배분
 - 재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반영
 -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43 ()	44 ()
■ 가	가	2	1 15
■ ,			44 2 3
			가

2. 시·도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 현황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7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예산 신청(단, 별도 지출한도는 해당 세부사업에만 배분 가능)
-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 편성
- '06년부터 배분모형에 따라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 배분모형은 재정수요와 낙후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 재정수요(가중치 30%) : 인구, 면적
 - 낙후도 요소(가중치 70%) : 지방소득세,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지수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

$$\log(y_i) = \beta_0 + \beta_1 \log(\text{인구}_i) + \beta_2 \log(\text{면적}_i) + \beta_3 \log(\text{지방소득세}_i) \\ + \beta_4 \text{노령인구비율}_i + \beta_5 \text{재정력지수}_i + \epsilon_i$$

* 각 변수는 최근 3년 값 평균

○ 사업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함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시·군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 현황

- 시군 자율편성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이 6개 포괄보조사업별로 신청이 가능함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이 지출한도가 되며 지출한도 내에서 신청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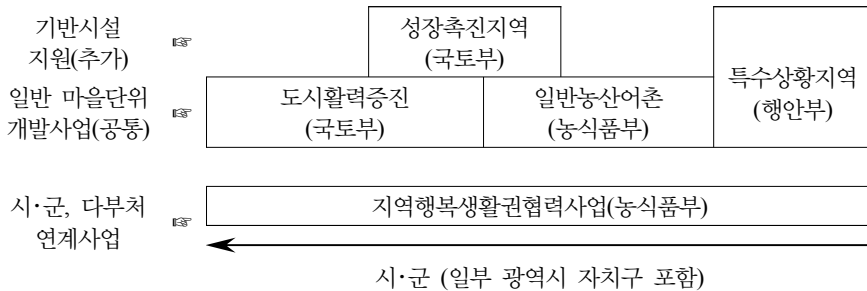
<표 15> 시군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㉔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㉑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㉕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㉒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㉖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㉓	소하천정비	50%

-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 및 주관부처별로 각각 별도 통보하고 있는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예산을 신청함

<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 “일반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2개 이상 시군, 다부처 연계사업 등 지원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 복합형태의 시 중 동(洞) 지역이 해당됨
 - * 우리동네살리기(내역사업)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사업 대상 지역 선정함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임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임
-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함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생활권(63개)을 형성한 시·군간,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지원함
 - 신규사업 반영없이, 기존 사업의 연차별 소요액만 반영함
- 소하천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지정·관리하는 소하천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하천이 대상임
- 신규소요는 시·군·구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고,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로 조정하여 요구해야 함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의 현안

1. 계획단계의 현안

- 신규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모호(부처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상이)
 - 지자체 사업부서에서는 중앙부처별로 신규소요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율 또한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체 재원이 과다소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
 -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어 총괄적인 현황파악이 어렵고, 각 부서에서도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시의 경우 도서관과 복합창작센터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군특 36개 항목분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하였음

- 자율편성 한도액 배분기준 및 산정방식 불명확
 - 자율편성 한도액에 대한 배분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현안이 항상 상존해 왔음
 - 시도 자율편성 한도액은 배분모형에 따라 산정 배분하고 있으나 배분에 있어서 배분기준이 명료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역별 배분 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시군의 한도액 변화의 폭이 신규사업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특정 지자체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 한도액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시군자율편성 한도액 설정시 해당 시군의 한도 산정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한도액으로 설정 배분

- 신규 사업은 광역을 거쳐 해당부처에 신청 후 부처 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 다음연도 한도액으로 추가 배정
- 계속사업 종료와 신규 사업의 추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 시군의 한도액은 없는데 실제로 ◇◇시의 경우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않아 균특사업이 전혀 없음

균특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율성 결여

- 중앙부처별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사전에 정한 후 각 부처별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정해 놓은 항목에 지역 사업을 꿰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이지만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율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
- 정해 놓은 항목에서 사업을 골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자체별로 예산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국비 지원비율의 미준수

-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포괄보조사업별로 국비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비율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시군 성장축진지역의 경우 지침상 보조율이 100%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50% 정도의 비율로만 지원하고 있음
- 매칭 예산도 상세 항목을 중앙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매칭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

2. 집행단계의 현안

포괄보조금제도 본연의 자율성 결여

- 균특회계제도는 포괄보조의 성격으로서 지침상 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일부 사업의 변경을 자율적으로 허용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사업의 내용변경시에도 광역 또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포괄보조사업이 내역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침상 집행잔액이 발생시 유사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함

- 이에 따라 본래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내용의 변경은 자율적으로 허용하고 상위 평가시 사업목적의 훼손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두 해 연속 예산 이월시 사업비가 소멸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

- 지침상 이월을 원칙적으로 한번만 인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사업 수행시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하여 이월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즉, 지역에 따라 이월 한 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토지보상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음

3. 평가단계의 현안

운영성과평가 지표인 실적행률과 사전이행절차의 현실적 한계 존재

- 운영성과평가의 경우 집행률 제고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전이행절차의 경우도 부지확보시 공모 탈락시 예산 낭비, 복잡한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군특사업의 지역자율계정 차등지원에 대한 평가는 (1) 군특회계 운영성과, (2) 균형발전 추진실적, (3)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협조도, (4)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 (5) 예산운영 성과평가 등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

으며 지역자율편성사업은 (1) 균특회계 운영성과, (4)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이 해당됨

(1) 균특회계의 운영성과평가 기준

- ① 균특회계 예산 실집행률
- ② '17년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준수 여부
 - * 매칭비율 준수 건수 / 매칭대상 국고보조사업 수
- ③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여부
 - ※ △10% 이상 구조조정 여부
- ④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 경쟁력 향상사업 지원평가 기준인 복합시설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 경쟁력 향상사업 지원평가의 경우 복합시설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문화체육,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의 소관부처가 모두 틀리고, 또한 소관부처별로 한도액이 있음에 따라서 실제로는 복합건물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려움
- 오히려 ▲▲도의 경우 복합건물을 계획했다가 분야별로 각각 건물을 조금씩 쪼개어서 간격을 두고 신속한 사례도 있음
 -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지원평가는 기초 지자체 간 공동추진사업, 복합시설사업 및 광역 지자체의 성장촉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19년 균특회계 예산 신청 실적으로 평가됨
 - ① (공동추진사업)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신규 사업 중 둘 이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
 - ② (복합시설사업)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신규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함에 따른 예산 절감액

③ (성장촉진지역) 시·도 자율편성 한도액에서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 지역에 배분된 예산 규모

전반적으로 중복평가의 문제가 있음

- 중앙부처, 균형위, 도단위 평가 등 다중 평가를 받게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부처평가가 있지만, 시도 평가가 또 있음(시군구의 경우)
- 균형위 평가와 기재부 평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중앙부처 차원의 평가는 부처의 권한이나 인센티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시도사업도 자체적으로 실국평가, 예산부서 평가, 균형위 평가를 받고, 균형위는 이를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의 객관성이나 계량화가 낮음

- 부처별 사업은 기재부에서 취합하여 평가하는데 사업의 효과나 수혜도보다는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조세연 평가항목의 경우 계량화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용이 강해서 평가결과에 대해 수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음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규모 미흡

-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인센티브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실정임

4. 균형발전 전담인력관련 현안

- 균특회계 시행 첫 해 전담팀 설치의 목적인 지자체별 일관된 균형발전계획 운영 및 사업추진 동력 약화

- 2005년 균특회계 설치 당시 균특회계제도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별로 균형발전팀을 운영토록 하였음
 - 이 때 균특회계의 관리 및 평가 등의 일관된 운영유지를 위해 광역시는 1인, 도는 2인의 전담 인력을 채용토록 하였으며 전액 국비지원을 하였음
 - 전담인력의 주요 역할은 5개년 단위 지역발전계획, 연단위 실행계획 연차보고서 작성이 주업무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계약계획제도, 심의위원회,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보조하게 될 것임
 -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지자체별로 전담팀에 대한 관심저하와 지원부족, 이로 인한 팀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담팀 설치의 본래 목적인 지자체 지속적 균형발전계획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전담팀 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중앙단위에서의 관리 부족
- 17개 지자체 균형발전팀의 인건비는 2018년도 이전까지는 100% 전액, 이후로도 50%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운영기준이 미비하고 관리 또한 되지않고 있다는 호소가 있는 실정임
 - 즉, 전담인력의 모든 채용과 관리권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우수준이나 급여방식, 계약기간이 상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근본적으로 균특회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기간제 전문직으로의 채용방식을 고용노동부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
- 국고지원사업이지만 지자체별로 전담팀 운영방식 상이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별로 담당사무를 살펴보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균특회계제도 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균형발전팀이 소속된 실단위 부서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외에도 건설도시국, 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국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시·도별 균형발전팀 업무분장

자치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서울	기획조정실	대외협력 담당관 (대외총괄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위원회 관련업무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운영 지역발전 및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지역박람회 운영지원
부산	기획관리실	기획 담당관 (광역행정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발전계획(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관련 연구·조사·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시책발굴 및 연구
대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업무 발전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작성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 균형발전박람회 업무 지원
인천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지역협력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 및 지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 계획 수립 추진
광주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균형발전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연차보고서작성
대전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지역발전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업무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 및 지원 市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

자치 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생활권 연구용역 추진(국비)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市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국비지원 인건비 등 지출 업무
울산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균형발전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분석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범부처 법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협의회 및 업무 지원 균형발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평가 업무 지원 균형발전박람회 기획 및 운영 지원
세종	균형 발전국	행정도시 지원과 (균형정책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원 시 5개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점검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정책담당 소관 서무·예산·회계업무
경기	기획 조정실	미래전략 담당관 (지역발전정책 담당)	선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 생활권 운영체계 지도·점검(시·도) 시·도 및 생활권 발전방안 연구 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지표관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생활권 운영체계 지도·점검(생활권) 생활권 사업관리(연계협력(선도), 새뜰마을, 창조지역 등)

자치 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조사·분석, 정보공유 지역발전사업 평가 지원(도, 시·군 포괄보조사업)
강원	기획 조정실	균형 발전과 (지역협력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 5개년계획 강원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 지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조성·운영 지역 생활권협의회 운영 지원(활성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 5개년계획 강원도 발전계획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수립·추진 지역생활권 과제 발굴 및 선정 지원 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추진 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지표 관리
충북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광역행정팀)	시간선택 제다급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새뜰마을(취약지역) 사업 발굴 및 추진 창조지역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발굴 및 추진 국가균형발전 관련 교육·행사·회의 등 기획 및 추진 기타 국가균형발전 관련업무 탐내 소관 사무
			시간선택 제다급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 도 발전시행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균형발전사업 평가실시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용역 추진 기타 국가균형발전 관련업무
충남	미래 성장 본부	미래 정책과 (지역발전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주관) 균형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 추진 균형발전박람회 업무 추진

자치 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투자협약 업무 추진(주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선도)사업 추진 창조지역사업 추진
전북	기획 조정실	기획관 (균형발전팀)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 지역발전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수립 생활권 발전 협의회 운영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생활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균형발전 업무 추진 지역발전사업 업무지원
전남	건설 도시국	지역 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선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균형발전 시행계획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전남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중앙부처(지역위 등)과 생활권간 업무 협의 지역발전 연구용역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추진(계획계약사업) 지역개발 공모 사업계획 컨설팅(투자선도지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기관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균형발전박람회 추진(콘텐츠 발굴, 전시용역)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현황조사 균형발전 정보시스템 관리 신규 사업 발굴 및 컨설팅 추진(신활력사업) 농어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새뜰마을(도시, 농어촌) 사업 추진 지역개발 공모 사업계획 컨설팅(지역수요맞춤)
경북	건설 도시국	균형발전 사업단 (균형발전기획 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사업 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지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자치 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등 신사업 발굴·분석·조사 등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새뜰마을사업 추진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분석 및 운영
경남	경제 통상국	지역 공동체과 (행복생활권 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현황 점검 (예산집행 현황, 사업정산서 취합, 사업변경, 기본계획 협의 등 추진 전반) 균형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박람회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 사업 발굴 및 컨설팅(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 함안,남해,하동)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현황 점검 (예산집행 현황, 사업정산서 취합, 사업변경, 기본계획 협의 등 추진 전반) 지역박람회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 사업 발굴 및 컨설팅(밀양,양산,의령,창녕,고성,산청,함양, 거창,합천)
제주	특별 자치 행정국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담당)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과제 기획·발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 새뜰마을 사업 포함) 기획·발굴·평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도 발전 및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세미나 등 개최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산업 관련 사항 균형발전박람회 기획·운영 지원

자치 단체	담당조직			담당사무
	실·국	부서명 (팀명)	직급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과제 기획·발굴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 기획·발굴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 도 발전 및 지역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 • 지역발전사업 평가 및 관리 • 지역발전정책 관련 세미나 등 개최 • 지역위 등 유관기관 동향 파악 관련 사항

제 4 장

일본 포괄보조금 (일괄교부금)의 분석

제1절 일본 일괄교부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일본 일괄교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제3절 사업의 운영사례

제4절 시사점

KRILA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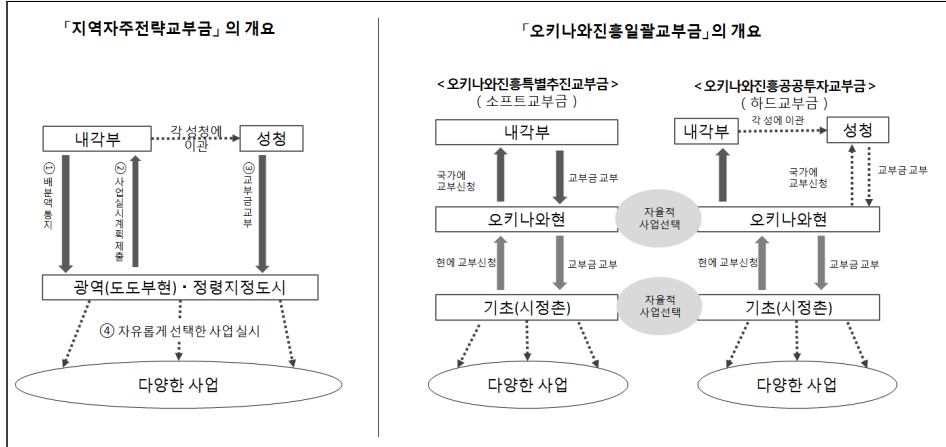
일본 포괄보조금(일괄교부금)의 분석

제1절 일본 일괄교부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1. 일괄교부금 제도의 설립 배경

- 일본의 일괄교부금 제도는 2011년~2013년까지 2년간 운용되다가 2018년 현재 폐지되었으나, 오키나와현에서만 특례로 「오키나와진흥 일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도 설립의 배경으로는 정권운영이 크게 관계되었는데 1955년 이후로 자유민주당이 정권 여당이었으나, 2009년 정권이 교체되어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매니페스트에 「일괄교부금」을 추가하게 됨
- 2011년에 정부예산으로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오키나와진흥 일괄교부금」으로 일괄교부금이 창설되었는데 오키나와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 및 정령지정도시(약 20개)에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이 교부됨
 -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진흥교부금」으로 오키나와진흥특별추진교부금 및 오키나와진흥공공투자교부금이 개설됨(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105조)
-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은 ① 관광진흥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 대상인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 ②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수도 정비 등 하드웨어사업이 대상인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의 2가지로 나뉨 (그림 1)

<그림 3> 일본 포괄적 일괄교부금 개요도(제도설립 : 2011~2013년)



2.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개요

가.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개요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목적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적확하고 효율적 실시를 도모하는 것임
 - 지방공공단체가 대상사업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한 후 작성한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사업실시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교부금을 교부했음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은 지방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소관하는 8성청(국토교통성, 농림수산업성, 후생노동성, 경찰청,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총무성)에서 받음
 - 특징으로는 내각부에 일괄예산을 계상하여, 각 성청에 관여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에 교부금을 받는 것임
-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출된 국고보조금 중,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투자적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자유도를 확대함

- 성청의 한계를 넘어, 9종류의 보조금을 일괄하여 객관지표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었음

<표 17> 국고보조금 9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일부 (국토교통성) • 농산어촌 지역정비교부금 일부 (농림수산성) • 수도시설 설비비보조 (후생노동성) • 교통안전 시설정비비 보조금 일부 (경찰청) • 학교시설 환경개선교부금 일부 (문부과학성) • 공업용 수도사업비 보조 (경제산업성) • 자연환경설비교부금 일부 (환경성) • 환경보전시설설비비 보조금 (환경성) • 소방방재시설 설비비 보조금 (총무성)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은 2013년 1월에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이 설치되면서 폐지·이행되었는데 제도창설에서 폐지·이행까지 경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8> 지역자주전략교부금제도 실시에서 폐지·이행까지의 경위

연대	사건, 배경
2009년	□ 정권교체 (자유민주당→ 민주당) 매니페스트에 「일괄교부금」을 넣음
2011년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제도 창설·운용 개시
2011년 3월	□ 동일본대지진 지진복구 가속, 사전방재 및 감재(減災)의 필요성

연대	사건, 배경
2012년 12월	□ 정권교체 (민주당→ 자유민주당) 경제측면 과제 : 장기간의 디플레·엔고(高)에서 탈피, 고용과 소득 확대, 지진재해에서 복구 아베(安倍)정권 “3개의 화살”(①대담한 금융정책 ②기동적 재정정책 ③민간투자에 활력을 넣는 성장전략)을 통한 제도 운영방침의 전환
2013년 1월	□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설치 역할 : 경제재생 사령탑 이로서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은 폐지·이행

나.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성과(2012년 7월 전국지사회)

- 「지역자주전략교부금」등의 실시로,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각성청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정한 테마를 설정해 횡단적 사업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 그 사례로, 동일본대지진 등을 경험한 후 「방재·재해대책」을 테마로 ① 재해에 강한 산림만들기를 위한 치산사업 ②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하천개수 ③ 긴급운송도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전개가 가능해 짐
- 또한 매해 도중에 일어나는 환경변화 및 사업 시행상황에 따라, 지방의 재량으로 소관성청을 넘어 유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대상사업 확대 등을 꾀할 수 있음

다.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과제(2012년 7월 전국지사회)

- 광역(도도부현)이 필요로 하는 총액이 확보되지 않아 계속사업 실시마저 지장을 받게 됨
- 각 도도부현의 예산 편성시, 2011~12년도 배분방법에 관한 상세정보가 시달되지 않음
- 사무절차에 관해, 원칙적으로 개별보조금 절차가 기본이고, 여기에 내각부 및 관계성청의 2중 절차를 필요로 하여 복잡해짐

3.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의 개요

- 오키나와진흥특별추진교부금 및 오키나와진흥공공투자교부금으로 구성된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은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후 현재도 남아있음
 - 이유는 오키나와현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표 19> 오키나와 일괄교부금 제도 설립의 역사적 배경

년대	역사적 배경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미국과 영국 연합국군이 일본본토공략을 위해 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1945년 오키나와 상륙 이에 대해 일본은 오키나와에 미군을 잡아놓아 시간을 버는 ‘지구전(持久戰)’ 전략을 세워 오키나와 본섬에서 지상전이 일어남. 오키나와전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한 주민이 군인 대신 전장에 차출되어 많은 주민의 목숨을 빼앗겼고, 오키나와본섬 전체가 쑥대밭이 됨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현은 미국 시정하에 놓여 현 내에는 미군기지가 설치
1972년	일본정부에 반환 반환된 후 4년마다 「진흥계획」에 근거해 국가에서 「오키나와진흥예산」이 계상됨
2009년	민주당 정권시절, 당시 총리대신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최소한 현 외 이동」을 주장해, 일-미, 오키나와현이 대혼란. 현민에 대한 미군기지부담 이해를 얻기 위해 「진흥비용」 증액
2013년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오키나와에만 오키나와진흥예산으로 일괄교부금이 남음
현재	오키나와현의 견해 “금후 오키나와진흥 전개에 관해서는 동일본대지진, 원전사고 대응 등, 국가의 여러 정책적 과제가 있는 중에도 자립적 경제구축과 이도진흥·기지방환 철거지 등, 오키나와의 특수사정에 유래하는 조건 불리성에서 생긴 과제는 아직도 남아있어, 오키나와진흥에 대한 국가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됨”(오키나와현 HP)

제2절 일본 일괄교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1. 일괄교부금 제도의 개요 및 현황

- 2013년 지역자주전략교부금 폐지 이후, 일괄교부금으로서는 「오키나와진흥 일괄교부금」만 제도운용 중임
 - 내각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각 성청에서 예산을 세워 지역에 배분하는 제도는 있으며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출·교부하는 자금에는 「국고지출금」과 「지방교부세교부금」의 2가지가 있음
- 알려진 바와 같이 「국고지출금」은 용도가 특정된 지출금이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용도가 자유로운 교부금임

2.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의 운영현황

가. 오키나와일괄교부금의 개요

- 오키나와진흥일괄교부금은 전술한 일본의 일괄교부금제도 설립 배경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등의 소프트사업이 대상이 되는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과 학교시설환경개선과 수도정비 등 하드사업이 대상이 되는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의 2가지로 나뉨
-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법의 예산산정방식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제105조의 3)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예산액 결정과 정부 재량 하에 맡기고 있음
- 일괄교부금 예산액은 통상의 예산편성과정과 같이 필요액을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지지정책에 대한 오키나와현의 자세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는 실정이 있음

-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오키나와진흥법(오키진법) 및 소프트교부금의 요청에서 보듯, 예산액 결정의 명확한 틀이 아닌, 수상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러한 자의적 운영을 초래할 여지를 정부에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이런 자의적 예산운영이 가능한 것은 일괄교부금이 당초부터 오키나와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로 설치되었으나 예산액 결정이 정부 재량 하에 있다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임(川瀬, 2018)

나. 오키나와진흥 일괄교부금의 배분방법

- 총예산액을 광역-기초에서 5:5 비율로 배분. 기초분에 관해서는 아래 표의 지표에 근거해 각 지자체에 배분이 결정됨

<표 20> 2017년도 기본틀 배분표

	균등할 (A)	기본지표(85%)		배려지표(15%)						기본지표+		기본배분액	
		인구 (95%)	면적 (5%)	재정력 가산 (60%)	이도 가산 (15%)	인구 감소 가산 (15%)	고령 인구 가산 (5%)	연소 인구 가산 (5%)	계	기본지표(B)		(C)=(A)+(B)	
										배분액	비중	배분액	비중
市계	11	77.4%	17.9%	17.9%	12.3%	2.1%	23.3%	28.8%	15.5%	124.69	66%	135.69	59%
町村계	30	22.6%	82.1%	82.1%	87.7%	97.9%	76.7%	71.2%	84.5%	62.31	34%	92.31	40%
市町村 계	4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7.00	100%	228.00	100%

자료) 오키나와현시정촌과 작성자료

다.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의 운영관리 현황

-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은 각 성청에서 요강이 정해져있음. 교부한도액도 성청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음
- 교부까지 흐름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시정촌 등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얻은 후, 교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내각총리대신은 각 교부담당대신에게 계획서를 송부해 계획을 확인함
 - 내각총리대신과 교부담당대신은 관계행정기관에 예산이관을 위한 협의를 하고 교부담당대신이 투자교부금 총액을 확정된 후 배분계획을 작성함
- 사업계획에 나온 교부대상사업 등의 성과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성과목표 달성상황에 관해 평가를 하여 이를 공표하고, 대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함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제7조)
- 사업성과는 미리 내각총리대신이 제시하는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참조하여 오키나와현이 자율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 및 평가결과를 공표해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교부담당대신에게 회부함

라.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 운영관리 상황

-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은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요강」(2012)에 규정되어 있고 교부대상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 교부대상사업

	교부대상사업
1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2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3	농림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4	1~3까지 거론된 사업 외,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5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
6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
7	5~6에 거론된 사업 외, 취업안정에 필요한 사업 등
8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9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10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11	의료 확보에 필요한 사업 등
12	과학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 등
13	정보통신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 등
14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
15	주류군용지 철거지 이용에 필요한 사업 등
16	이도(離島)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17	환경보전 및 방재, 국토보전에 필요한 사업 등
18	1~17에 거론된 사업 외, 오키나와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 기타 특수사정에 기인하는 사업 등

자료) 오키나와진흥특별추진교부금 교부요강

- 교부까지의 흐름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오키나와현 지사가 대신에게 송부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요강 제5조)하면 지사는 교부금교부를 받으려 할 때,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대신은 신청에 관한 교부대상사업 등이 적정한지 인정될 때 교부할 교부금액을 결정(동 요강 제9조)함
- 내각총리대신은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 적합한 때 금액을 결정함(동 요강 제15조)

- 비목, 용도 점검평가로 전체사업에 점검항목 4개가 설계되어 있음(2016년도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사업(시정촌분) 검증시트)고 평가는 교부금을 교부받은 시정촌이 함

<표 22>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의 비목·용도 점검평가항목 일람

점검항목	
1	지출처 선정방법은 타당한가
2	예산규모는 사업내용에 알맞은 적절한 규모로 되어 있는가
3	수익자와의 부담관계는 타당한가
4	비목·용도가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사후평가 방법은 대상사업마다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상황에 관해 목표에 대한 실적치를 달성률(%)로 환산한 후, 평가함
 - 각 사업단위에서 ‘검증시트’를 작성(2016년도 오키나와진흥 특별교부금 시정촌실시분 사후평가결과, 2016)하고 성과목표 평가기준은 표와 같음

1. 사업마다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치 산출방법
$\text{달성률} = \frac{\text{당해연도 실적치}}{\text{당해연도 목표치}} \times 100(\%)$
※ 정성적 목표에 관해서는, 목표달성의 경우 100%로 하고, 이외는 0%로 함 ※ 1사업에서 복수의 목표를 설정한 경우, 평균치를 해당사업의 달성률로 함
2. 산출된 달성률에 따라 사업마다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구분
‘달 성’ = 달성률 100% 이상 ‘대개 달성’ = 달성률 70% 이상 100% 미만 ‘일부 달성’ = 달성률 70% 미만 및 일부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미 달 성’ = 달성률 70% 미만 및 모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료) 2016년도 오키나와진흥 특별교부금 시정촌 실시분 사후평가결과

- 오키나와진흥 일괄교부금 도입과 오키나와진흥체제의 변용, 2016년도 실적 보고서 의회 및 의원에게도 성과목표 설정과 이에 근거한 사업검증은, 의회의 논의를 보는 한 매우 적음
 - 지금까지의 고율보조사업과 비교해, 과연 의회의원과 행정수장, 간부, 직원은 목표관리형 지자체경영능력을 뛰어나게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島袋, 2017)
 -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성과지표는 사업마다 설정하고 있어, 공통된 성과지표는 없음

제3절 사업의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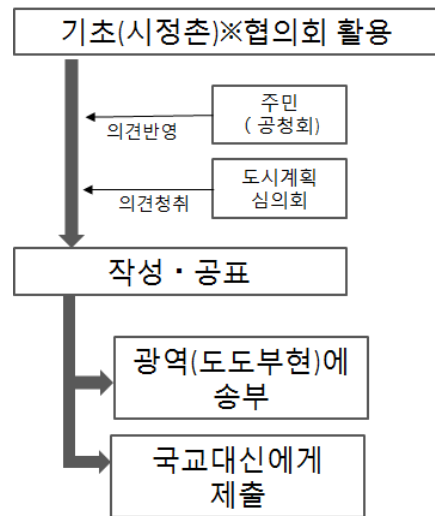
1. 도시재생추진사업비 보조(국토교통성)

가. 목적 및 개요

○ 본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살린 개성 넘치는 마을만들기를 실시하여 전국의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기초(시정촌)가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작성하고,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해 실시된 사업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금을 교부.
- 2004년도에 「마을만들기교부금」 제도로 창설
- 2010년도부터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에 통합되어 동 교부금의 기간사업인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으로 위치함.
- 교부기간 종료시, 시정촌은 목표 달성상황 등에 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그림 4> 도시재생정비계획 작성프로세스

○ 국비 비율은 사업비에 대해 대략 40% (교부금액은 일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

※ 중심시가지활성화 등 국가가 특별히 추진해야하는 시책에 관한 일정요건

을 충족하는 지구에 관해서는, 교부율 상한을 45%(통상 40%)로 하여 중점지원

나. 평가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
- 마을만들기 목표와 목표를 정량화한 지표 및 수치목표는 지구(地區)의 실정에 맞추어 임의로 설정가능
- 달성가능한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지, 굳이 목표를 높게 설정하여 지구의 비약을 목표로 할지는 각 지구의 판단에 맡김
 - 수치목표가 너무 낮으면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으나, 사업효과가 적다고 보일 우려가 있는 반면, 수치목표가 너무 높으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계획의 타당성(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효과·효율성,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3> 계획평가의 타당성검증 지표

<p>1. 목표의 타당성</p> <p>① 도시재생기본방침과의 적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의 목표가 도시재생기본방침과 적합함 · 상위계획 등과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p>② 지역의 과제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과제를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위상이 높음
<p>2. 계획 효과·효율성</p> <p>③ 목표와 사업내용의 정합성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와 지표, 수치목표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 지표, 수치목표와 사업내용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 목표 및 사업내용과 계획지구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 지표, 수치목표가 시민에게 알기 쉽게 되어 있음 · 지역자원 활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계 등을 도모한 계획

<p>④ 사업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사업효과가 확보되어 있음 (비용대비 효과분석 결과) ·사업연계 등에 의한 상승효과,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음
<p>3. 계획의 실현가능성</p> <p>⑤ 지역의 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를 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주민,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책정 ·계속적인 마을만들기 전개가 예상됨 <p>⑥ 원활한 사업집행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을 깊이 숙고 ·교부기간 중의 계획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계획에 관해 주민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

○ 사후평가로, 계획서 안에 표기된 목표에 맞는 지표가 사용되고 지표의 예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사후평가지표 예

지표분야	데이터 종류	주요 참고자료
인구·세대	<p>①전인구, 연령계급별인구, 전출입인구 등</p> <p>②전세대수, 세대주 연령계급별 세대수, 아동학생수가 있는 세대 등</p> <p>③신규주택착공수, 주택호수 등</p>	<p>①국세조사</p> <p>②주민기본대장</p> <p>③건축착공통계, 건축확인신청건수</p>
집객 등	<p>①지구 관광객수, 관광스팟 방문자수, 관광시설이용자수 등</p> <p>②지구내방자수, 상점가내방자수 (이용자수) 등</p> <p>③지구 숙박객수</p>	<p>①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관광통계조사 등</p> <p>②도도부현, 관광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관광통계조사 등</p> <p>③전국통일기준의 관광통계조사</p> <p>④기타 보유자료</p>

지표분야	데이터 종류	주요 참고자료
교통환경 등	①도로, 역전광장, 공공시설의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교통량 ②위법주차, 노상주차대수 ③방치자전거 수 ④교통체증길이 ⑤교통소요시간	①도로교통센서스 ②도도부현, 시정촌에 의한 교통조사 등 ③기타 보유데이터
교통안전	①교통사고 발생건수	①경찰자료
공공교통 기관 이용상황	①철도역, 전철 승객수(승객수) ②노선버스, 커뮤니티버스 이용자수 등	①교통사업자 등 공표자료 ②시정촌 통계서 등 ③기타 보유데이터
상업활동 등	①소매판매액, 상업판매액 등 ②상업종사자수 ③기타(내점자수, 점포수, 빈점포수 등)	①상업통계조사 ②경제센서스-기초조사 ③기타 보유데이터 ④도도부현, 시정촌의 상권조사 등
공공공익 시설 이용상황	①지역교통시설(교통센터, 공민관 등) 이용자수, 횡수 등 ②시민이용공공시설(공원, 광장) 이용자수, 횡수 등 ③기타 공익시설(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육아지원시설 등) 이용자수, 횡수 등	①시정촌 통계서 ②관계부서가 개별로 보유한 데이터 ③기타 보유데이터
인프라 정비상황	①도로, 보도 정비상황(면적률, 연장 등) ②공원, 광장, 녹지 등 정비상황(인구당 면적, 유치권인구 등) ③시가지의 안전성·방재성(소방활동근란지역, 협소도로율, 피난권역, 피난지면적 등) ④배리어프리 정비율	①도시계획기초조사 ②도시계획현황조사 ③지형도 등 도면활용
이벤트 개최상황	①이벤트 개최횟수 ②이벤트 참가자(집객), 참가단체 수	①시정촌이 보유한 자료 ②기타 보유자료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지역활동	①마을만들기, 커뮤니티활동 참가자수, 참가단체수 ②마을만들기, 커뮤니티 활동 개최횟수 ③방재조직가입율, 가입자수, 방재활동 참가율 등	①시정촌이 보유한 자료 ②기타 보유데이터

지표분야	데이터 종류	주요 참고자료
만족도 조사		①시정촌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과거, 교부개시 전년도) ②설문조사(교부개시 전년도, 최종년도 또는 교부기간 익년도)

자료)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평가 안내 지표활용매뉴얼

2. 오키나와의 일괄교부금 사례

가. 2018년도 오키나와 공공투자교부금 활용사업 사례

- 2018년도 오키나와 공공투자교부금의 활용사업 예는 다음과 같음

<표 25> (일부발취) 2018년도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 활용사업 (주요사업)

2018년도 당초예산액 : 579.4억엔	
○ 사회자본정비 342.2억엔	
도로 262.2억엔	오키나와 도시모노레일연장정비, 도로정비, 교량보수 등
항만 17.8억엔	항만개수, 녹지 등 정비
치수 11.0억엔	하천개수, 사방(砂防) 등
해안 4.3억엔	노후화대책, 해안환경정비 등
○ 학교시설환경개선 48.7억엔	
학교개축 등 46.0억엔	학교시설 개축 등
산업교육시설 2.7억엔	산업교육시설 실습에 필요한 특별조치 정비
○ 농림수산물기반정비 92.0억엔	
농업농촌 77.8억엔	농산어촌활성화대책정비 등
삼림 0.8억엔	예방치산 등
축산 2.1억엔	초지축산기반정비

어항 11.3억엔	어촌지역정비 등
○ 수도시설 공업용수도 정비 91.5억엔	
수도 91.2억엔	정수장 정비, 송수관 정비, 광역화시설정비 등
공업등 수도 0.3억엔	수로터널 개축, 배수관 정비
○ 의료시설 등 시설정비 4.8억엔	민간의료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
○ 사회복지시설등 시설정비 0.1억엔	민간 장애인관계시설 개수에 대한 보조
○ 환경보전시설정비 0.1억엔	국정공원시설정비

자료) 오키나와진흥 공공투자교부금제도 요강 제8 '2018년도 활용사례'

나. 2016년도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 활용사례 : 관광안내소 외국인 대응스텝 배치사업

○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번호·사업명	1-2 관광안내소 외국인대응스텝 배치사업
시정촌 명	나하시
담당부과 명	경제관광부 관광과
사업실시년도	2013~2021년
사업내용	설문조사 등으로 수요를 파악하면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안내서비스 및 관광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나하시 관광협회의 관광안내소 사업을 지원
실시방법	보조금
예산액·집행액	2016년도 예산현액 : 30,000,000엔 2016년도 집행액 : 30,000,000엔 (이 중, 교부금총당액 24,000,000엔)
예산상황 설명	관광안내소에서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스텝 배치 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
활동목표·달성상황	【달성지표】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관광안내 실시에 필요한 스텝 배치 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 【목 표】 실시 【실 적】 실시

	<p>【달성지표】 설문실시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파악, 더 나은 서비스 충실 도모</p> <p>【목 표】 설문실시를 통한 이용자만족도 및 수요파악</p> <p>【실 적】 설문실시를 통한 이용자만족도 및 수요파악</p> <p>【달성상황 설명】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태프를 통한 관광안내를 지원함 안내소에서는 안내업무와 함께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이 실시됨. 안내소 이용목적으로는 목적지에의 액세스방법 확인, 팸플렛 종류 입수 등이 많았고, 이어서, 추천관광스팟과 음식점 정보 입수 등이었음. 이들 모두 인터넷 등으로도 입수 가능한 정보였으나, 직접 현지에서 정보수집이 많이 요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음. 또한 안내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회신이 많았음</p>
<p>성과목표·진척상황</p>	<p>외국인 관광객의 안내소이용자 [목표] 8,500명 [실적] 16,115명 이용자 수요에 대응한 관광안내 실시(참고지표) [목표] 실시 [실적] 실시 와이파이 공유기 렌탈(참고지표) [목표] 설정없음 [실적] 34건 [진척상황설명] 2016년 외국인 이용수는 16115명으로 목표를 크게 상회함. 이용자의 국가지역별 내역은 한국2078명, 중국 2801명, 대만 3065명, 홍콩 2093명, 유럽지역 3045명 등으로 집계. 2016년도 증가요인으로는 저가항공노선 진입을 포함한 해외항공노선의 확충과 크루즈선 회수증가 등을 생각 가능</p>
<p>활동 검증</p>	<p>[추진상 유의점(문제, 외부환경 변화)] 외부환경 변화, 2014년부터 수유공간, 휴식장소 제공 등, 관광컨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간판(Digital Signage)설치 [개선여지 검증(더 나은 효율 향상)] 양호한 환경 유지 [추진상 유의점(문제, 외부환경 변화)] 문의내용은 나하시내에 한정되지 않은 전지역 내용이 많음. 또한 팸플렛에 관해 외국인관광객 요구는 다양하여, 문의내용이 많았던 사항에 관해서는 안내소에 작성해 대응 중. 나아가 설문에서 요청이 있었던 와이파이 렌탈 대출 개시 [여지개선 검증(더 나은 효율 향상)] 다언어로 시내의 외국인관광객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공공성 공익성이 높으나, 이에 맞는 수익성확보가 어려워, 수익성</p>

	제고방법에 관해 필요한 지도를 하면서, 안내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갈 필요 있음.		
금후 활동방침	금후에도 계속하여 본 현의 주요관광시설, 이벤트 등을 파악해, 안내소로서 기능. 크루즈선 기항횟수 증가, 항공노선 확충 등에 따라 관광안내소 외국인이용자수는 매해 증가. 이와 함께 관광안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수하물 위탁 서비스, 자동판매기 증설 등 수익성확보 사업에 관해 금후 검토		
자금 흐름	<p> 총사업비 : 33,844,000엔 교부대상사업비 : 30,000,000엔 (교부금총당액 24,000,000엔, 시정촌부담금 6,000,000엔) 교부대상의 경비: 3.844,000엔 </p> <pre> graph LR A["나하市 30,000,000엔"] --> B["보조금 30,000,000엔"] B --> C["(일반사단법인) 나하市 관광협회 30,000,000엔"] C --> D["·협회부담분 (교부대상외 경비) 3,844,000엔"] </pre> <p> ·나하市 관광진흥사업보조금 ·관광안내운영보조 </p>		
비목·용도 점검평가	평 가	점검항목	평가관련 설명
	○	지출처 선정방법은 타당한가	관광협회는 봉사와 연계해 관광행정을 추진하는 단체로, 안내업무에 관한 충분한 실적이 있어 타당
	○	예산규모는 사업내용에 걸맞는적정한 규모인가	내방객수에 대응가능한 필요충분한 인수가 적산되어, 예산규모는 적정했음
○	수익자와의 부담관계는 타당한가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비목, 용도가 사업목적에 따라 정말 필요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 시, 정말 필요한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 중
--	---	-------------------------------------	---

자료) 2016년도 오키나와진흥 특별추진교부금사업(시정촌분) 검증시트(일부발체 보고자가 편집)

○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2016년도 성과목표(지표)	2016년도 성과실적(지표)	종합평가 ※4
외국인관광객 안내소 이용자 : 연간 8500명 (기준 2013년도 7472명)	외국인관광객 안내소 이용: 16115명	◎ : 달성 ※5
이용자 수요에 대응한 관광안내 실시	관광안내 실시	

자료) 2016년도 오키나와 진흥 특별추진교부금사업(시정촌분) 검증시트(일부발체 보고자가 편집)

※4 :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표 8 참조

※5 : 달성=◎, 대략 달성 = ○, 일부달성=△, 미달성= 未,

이월 = 繰, 수행곤란 = -


제4절 시사점

- 일본의 일괄교부금은 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제도의 목적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균특회계 제도 운영의 목적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짐
 - 즉, 지자체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후 작성한 사업실시계획에 근거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보조한다는 면에서, 중앙에서 기획하고 지방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과는 달리 지방에서 중앙으로 사업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임
- 일본의 일괄예산 계상 사례 및 프랑스 계획계약제도 형식의 균특 운영방안 도입 검토
 - 일본의 경우 일괄교부금 예산을 내각부에 일괄 계상하여, 각 성청에 관여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와도 비슷한 운영방식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처별로 별도의 예산편성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컨트롤타워(예: 균형위)에서 부처사업을 총괄 운영 및 평가까지 실시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일본은 국가에서 지출된 국고보조금 중,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투자적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등 보조금의 자유도를 확대하였는데 성청의 한계를 넘어, 9종류의 보조금을 일괄하여 객관지표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었음
 - 예를 들어, 동일본대지진 후「방재·재해대책」을 재해에 강한 삼림만들기를 위한 치산사업,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하천개수, 긴급운송도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전개가 가능해 졌음

- 또한 매해 도중에 일어나는 환경변화 및 사업 시행상황에 따라, 지방의 재량으로 소관성청을 넘어 유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각 성청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정한 테마를 설정해 횡단적 사업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나치게 사업범위를 구체화해서 사업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기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된 제도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평가 지표의 다양화 및 자체평가 지원

- 오키나와 진흥 특별추진 교부금의 경우 사업별로 검증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지표를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소이용자로 하고, 목표를 8,500명, 실적은 16,115명이며 진척상황은 2016년 외국인 이용수는 16115명으로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이용자의 국가는 한국2078명, 중국 2801명, 유럽지역 3045명 등으로 집계하고 2016년도 증가요인을 설명하는 등 관리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지표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통환경은 도로, 방치자전거 수, 교통량, 소요시간으로, 이용시설은 숙박객수, 내방자수로, 상업활동은 판매액, 종사자수, 내점자수, 빈점포수로 사례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시정촌 통계서, 관광통계조사, 경찰청 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평가시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표 함에 따라 일본과 같이 사례지표를 제공하여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균특회계 평가지표의 경우 다소 단순하고 주관적임에 따라 상위평가에서도 평가지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임



제 5 장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균특회계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제2절 균특회계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KRILA

제 5 장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균특회계 운영단계별 개선방안

1. 계획단계의 개선방안

가. 부처별 가이드라인 통일

- 부처별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정중석, 2017)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임
- 지자체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공모에서 실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왔으며 특히, 지자체 조직운영의 특성상 순환 보직되는 특징이 있음에 따라 신규자가 왔을 때는 선정여부가 불투명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 즉,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전이행절차인 부지확보, 공모제안서 용역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지출했으나, 공모에서는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고 함
- 이에 소관부처별로 별도로 작성되어 지자체 각 사업부서로 통보되는 지침을 균특위에서 전체 취합,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선정기준과 부처별로 차별적 선정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지자체에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균특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좀 더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 예측 가능한 사전 평가기준 제시

- 일본의 경우 일괄교부금 지원시 사용될 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제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사전 자체 검토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부처별로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상이하여 사업 담당자도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균특위원회 차원에서 일관된 지원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의 준비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아래와 같이 목표의 타당성에서 상위 기본방침이나 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이나 계획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정합성, 계획의 실현가능성에서 지역의 열의나 집행환경 등을 짚어볼 수 있도록 기준들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업 소관부처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모한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목표의 타당성 검토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제시하고 있음

<목표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기본방침과의 적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의 목표가 도시재생기본방침과 적합함 • 상위계획 등과 적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 지역의 과제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과제를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위상이 높음

- 특히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계획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를 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 주민,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계획을 책정 •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전개가 예상됨 - 원활한 사업집행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을 깊이 숙고 • 교부기간 중의 계획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 계획에 관해 주민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

2. 집행단계의 개선방안

가.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 균특회계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장점만을 바탕으로 설계된 포괄보조금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부 사업내용 변경시 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즉, 사후 자체평가나 균특위 평가시 포괄보조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에 지출된 경우,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지자체 균특사업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내역사업의 소관부처별 구분을 없애고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계속비 예산 이월 원인의 차별화

- 지자체에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는 국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도 있지만,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
- 지침 상 두 해 연속 이월하는 경우는 계속사업비가 소멸되고 이 때 신규 사업 까지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 균특예산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재정력이 좋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균특예산이 소멸되는 경우 균특사업에 대한 의욕 자체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비가 소멸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월 원인을 차별화하여 사업추진 여건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이월은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평가단계의 개선방안

가. 평가의 일원화 필요

- 균특회계 사업의 경우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등 다부처에서 시행하고 있고 총괄은 균특위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규모는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있음
- 이에 공모단계 뿐만이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도 중복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사업부서나 균특회계 총괄부서에서는 이중 평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별 소관 부처에서 평가를 한 후 이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균특위에서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규모는 크지 않은 균특사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음
- 따라서 평가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의 소관부처에 균특위의 평가기준을 받아서 그 결과를 균특위에 송부하여 균특위의 평가를 대체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두 번째는 균특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균특위에서 소관부처별 평가기준들을 취합하여, 소관분야별로 차별성 있게 평가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소관 부처의 평가는 생략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일원화하든지 후술할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나. 평가지표의 구체화, 계량화 필요

- 균특위에서는 차등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를 산정, 다음 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음
- 이 중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 사전절차 이행과 같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지 토지 소유자의 설득여부에 따라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성과평가지 시기집행률과 같이 사업비 집행률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을 검토 및 취합하여 좀 더 구체화 되고 적실성 있는 지표가 발전될 필요가 있음
- 또 하나는 평가지표가 계량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오에 따라 일본의 오키나와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균형위를 중심으로 계량지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오키나와현의 경우 인구·세대 측정항목은 주택호수, 전출입 인구 등으로, 교통환경은 위법주차, 노상주차대수, 방치자전거 수, 교통체증길이, 교통소요시간으로, 이벤트 개최상황은 이벤트 개최횟수, 이벤트 참가자수, 참가단체수 등 계량화된 지표들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가시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시도나 시군구별로 자체평가지 사용될 성과지표를 일본과 같이 관련 지표를 예시하여 지자체에서 좀 더 용이하게 취사선택하여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선정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균특회계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1.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 선행연구(정중석, 2017)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친 균특회계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부처의 강한 개입 및 무관심 등의 사유로 각종 문제점이 상존함을 지적하고 있음
 - 즉, 포괄보조사업 편성구조와 부문발전계획·시도발전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 포괄보조금이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낮은 비중 등으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인이 미흡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예산편성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조성 미흡, 균형위와 지자체간 평가 단위의 상이 등을 지적함
- 이에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의 중기 예산수요 등에 기반하여 지역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성과가 우수한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포괄보조사업의 통합·단순화가 필요한데 부처별 1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단순화하여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내역사업을 보다 창의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균특회계 전담조직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자체의 경우 실국과장도, 실무자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3년 단위로 업무이동이 되는 실정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균특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 균특업무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기초지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소관부처나 균특위의 메타 평가를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개발사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지역발전이나 지역개발 전문가를 채용,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균특사업을 유치한 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또한 원활히 진행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균형발전팀 운영비인 인건비 지급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전담인력의 채용조건이나 계약기간등의 최우수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명확한 인력운영기준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균특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이러한 인력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계획계약제도와외의 관계 사전 검토방안

- 계획계약은 프랑스에서 레지옹(지자체)과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를 분담할 것을 국가와 레지옹의 대표가 공식계약을 통해 약속하는 것임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역계획의 일부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을 도입하였음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각 레지옹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레지옹이 체결하는 6년 장기계약을 의미함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의 목적은 국토의 설비수준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의 촉매제가 되는 것임
-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협약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레지옹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함

- 협약제도의 본질적인 의의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역과 중앙의 역할분담이 “지역의 사업기획”과 “중앙의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하는 것임
- 균특회계는 지자체 자체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의 예산을 패키지방식으로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협약제도의 의의와 상대적으로 부합함에 따라 도입과 도입방식이 검토되고 있음
- 이에 균특사업을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단위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식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별첨 1. 지역자율계정의 사업군별 대상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비고
[지역자율계정]			
<input type="checkbox"/> 시·도 자율편성사업 ■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37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 ()안의 사업명은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내역사업의 예시 ■ '19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행안부 문체부	1. 지역공동체 일자리 (1. 마을기업육성)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1.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3.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4.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 공립미술관건립지원) (3. 공립박물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6.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 비엔날레지원) (9. 생활문화센터조성) (10.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11. 작은도서관조성) (12. 전통문화진흥지원) (13. 전통사찰보수정비) (14.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15.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6.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5.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 관광자원개발 (1. 관광안내체계구축) (2. 관광지개발) (3. 광역권관광자원개발) (4. 국민여가캠핑장조성) (5. 문화관광자원개발) (6.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농식품부	(7. 생태녹색탐방로안내체계구축) (8.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7.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2.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8. 지역문화행사지원 (1. 지역문화행사지원) 9. 농업기반정비 (1. 가축분뇨처리지원) (2.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3. 농업경영컨설팅) (4. 농업인교육훈련) (5. 대구회경지정리) (6. 밭기반정비) (7. 소규모배수개선) (8. 시군수리시설개보수)	

구분	소관	사업명	비고
	<p>산업부</p> <p>복지부</p> <p>환경부</p>	<p>1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농촌산업화기획평가체계구축) (2. 농축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3. 농축산물제조가공지원) (4. 농축산물체험전시지원) (5. 농촌체험관광지원) (6. 특화농공단지조성 및 노후단지개보수지원) (7. 6차산업화지원) (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p> <p>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2. 향토산업육성)</p> <p>12. 농촌형교통모델 (1. 농촌형교통모델)</p> <p>13.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 (2. 지역산업마케팅지원) (3.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원)</p> <p>1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p> <p>15.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p>	
		<p>(1. 강변여과수개발) (2.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3. 농어촌생활용수개발)</p>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6. 식수전용저수지확충사업)	
		16. 노후상수도 정비 (1. 노후 상수관망) (2. 노후 정수장)	
		17. 생태하천복원 (1. 생태하천복원)	
		18.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1. 비산먼지저감사업) (2.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고용부	19.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1.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여가부	20. 청소년시설확충 (1. 청소년시설확충)	
	국토부	21. 주차환경개선지원 (1.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2. 노상무인주차기 설치) (3.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4. 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22. 대중교통지원 (1.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2. 물류단지진입도로조성) (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23. 지역거점조성 지원 (1.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2.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해수부	(3.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24. 공공형택시지원 (1. 공공형택시지원) 25. 지방하천정비 (1. 지방하천정비) 26.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마리나시설조성) (2. 연안정비) (3. 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 (4.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5. 해양쓰레기선상집하장설치)	
		(6. 해양쓰레기정화) 27. 수산물가공산업육성 (1.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28. 어업기반정비 (1. 내수면어업생산시설) (2.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3.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4. 소형어선인양기설치) (5. 수산종묘관리사업) (6. 양식어장관리) (7.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8. 어업인편의시설조성) (9. 어초어장관리) (10. 유류피해지역지원조성) (11. 인공어초사업)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12. 지자체관리어항건설) (13. 해조류부산물재활용) 29.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수산물유통시설건립) (2.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3.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4. 어촌체험관광지원) 3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1. 수산물안전검사장비구축) (2. 수산물안전검사장비운영) 3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 등 3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촌지도기반조성) (2.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4.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33. 산림경영자원육성 (1. 나무은행조성운영)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산림서비스증진) (4.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5. 임산물수출촉진) 34. 임도시설(국유림제외) (1. 임도시설)	
		35.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산림레포츠시설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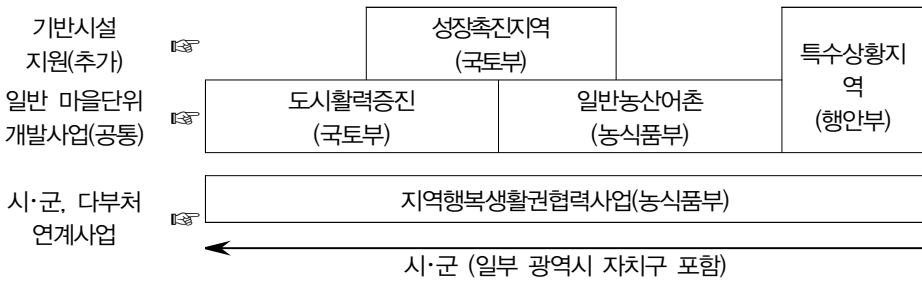
구분	소관	사업명	비고
	<p>중기부</p> <p>새만금청</p>	<p>(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p> <p>(3. 산림휴양치유인프라구축)</p> <p>(4. 숲길조성관리)</p> <p>(5. 유아숲체험원조성)</p> <p>(6.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p> <p>(7. 지방정원조성)</p> <p>(8. 지역생태숲조성)</p> <p>(9. 지자체도시숲조성)</p> <p>(10.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p> <p>(11. 치유의숲조성)</p> <p>36.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p> <p>(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p> <p>(2. 중소기업도매물류센터 건립)</p> <p>37.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p> <p>(1. 공업용수도건설지원)</p>	
<p><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자율편성사업</p>			
<p>■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 소요는 신청한도와는 별개로 시·도에 신청</p> <p>■ 부처는 계속소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며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p>	<p>행안부</p> <p>농식품부</p>	<p>1. 특수상황지역개발</p> <p>(1. 기초생활기반확충)</p> <p>(2. 지역경관개선)</p> <p>(3. 지역소득증대)</p> <p>(4. 지역역량강화)</p> <p>2. 소하천정비</p> <p>(1. 소하천정비)</p> <p>3. 일반농산어촌개발</p> <p>(1. 기초생활기반확충)</p> <p>(2. 지역소득증대)</p> <p>(3. 지역경관개선)</p>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국토부	(4. 지역역량강화) (5. 신활력플러스) 4.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2.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3. 연계협력사업) 5. 성장촉진지역개발 (1. 지역개발지원) (2. 도서개발지원) 6.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경제기반형도시재생) (2. 근린재생형(일반형)) (3.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별첨 2. 시·군·구 생활권 사업의 지역 구분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체계

- 시·도 자율편성 시 과소투자 우려가 있는 시·군·구 생활권 관련 사업은 계속/신규 소요를 별도로 산정하여 시·군·구별 한도배분



시·도 현황(17개)

특·광역시(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자치시(1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시·군·구 현황(229개)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226개 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총 229개 시·군·구로 구성

구분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	특수상황 ¹⁾	성장촉진
계(229개)	123	143	15	70
시(78)	일반시(21)	19	2	3개 지역중 특별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 및 185개 도서
	도농복합시(57)	52*	5	
군(82)	71	3	8	
구(69)	-	69		

¹⁾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15개 시군 및 186개 도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시·군·구 생활권 개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대상 지자체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5개 도서 *균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 및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 지역이 아닌 186개 도서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3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143개 시·구) * 우리동네살리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연계협력사업 : 전국 63개 행복생활권 ·취약지역개조사업 : 전국 시군구
	*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50%	·70~80%
대상 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 사업으로 구성 ·성장촉진지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지역행복생활권지역 : 연계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구성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개발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법 등	·관련사업 ·법률준용

1 특수상황지역

①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15개 시·군

합 계	15개 시·군
인천시(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7)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6)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②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185개)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

* 도서 이외의 육지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농 산어촌지역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6개	특수상황 186개
인천	소 계	32	
	중 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서 구	1	세어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1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측도
경기	소 계	4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2	제부도, 국화도
충남	소 계	21	
	보령시	13	효자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원산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외연도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서산시	4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홍성군	1	죽도
	당진시	3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전북	소 계	16	
	군산시	16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전남	소 계	48	
	목포시	5	고하도, 울도, 달리도, 외달도, 장좌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송도(돌산), 송도(울촌), 소늬도, 대늬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금죽도, 수향도, 추도
	무안군	1	탄도
경남	소 계	57	
	창원시	5	실리도, 송도, 양도, 잠도, 우도
	통영시	38	오비도, 곤리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옥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죽도, 매물도, 용호도, 비진도, 상도, 하도, 수우도, 갈도, 국도, 납도, 소매물도, 입도, 초도
	사천시	6	진도, 월등도, 마도, 저도, 신도, 신수도
	거제시	8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황덕도, 이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 계	8	
	제주시	6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② 일반 농산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군의 군은 제외) 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23개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③ 도시활력증진지역

- 특별·광역시시의 군·구 및 시 지역
 - 단,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 지역만 해당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내역사업)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구 분	143개 시·군·구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충북(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강원(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전북(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5)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_____ 은 도농복합시

4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6호)
-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구 분	70개 시·군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성장촉진지역 도서 현황(185개 도서)>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5개	성장촉진 185개
충남	소계	3	
	서천군	1	유부도
	태안군	2	가의도, 외도
전북	소계	7	
	고창군	1	내죽도
	부안군	6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소계	167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첨도, 죽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39	평일도, 층도, 우도, 다량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록도, 마삭도, 서넙도, 넙도(노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넙도(고금),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소량도
전남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슬도, 탄향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광도, 진목도, 옥도, 늘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혈도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신안군	68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흥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울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간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문병도, 장재도
경북	소 계	2	
	울릉군	2	울릉도, 죽도
경남	소 계	6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